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평생교육과장)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3.(월) ~ 9. 8.(금)

2. 제안이유

-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인 진로탐색기회와 맞춤형 최신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1일 개소한 달서구 진로 진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진로진학 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m ²)	운영법인	비고
달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지상 1층 (88m ²)	미래인재교육원	직원 3명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진학상담 및 입시관련 정보 제공
-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지원
- 수요자 맞춤형 학습컨설팅
-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민간위탁기간: 3년(2024. 1. 1.~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선정

4. 관련근거

- 「진로교육법」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진로진학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달서구는 관내 56개 초등학교(29,510명), 29개 중학교(15,274명), 23개 고등학교(16,837명), 1개 특수학교(310명)이 있으며, 2013년 교육부로부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이에 맞추어 2020년 개소한 달서구진로진학센터는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입시설명회, 입시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인적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지역 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특히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서 대학 입시설명회 및 입시컨설팅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약 7,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달서구진로진학센터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 재위탁의 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는 것으로 형식적 적법성과 운영의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진로·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